

---

---

# 韓國輸入政策의 歷史的 考察과 向後 政策方向

徐 錫 泰

▷ 目 次 ◁

- I. 序 論
- II. 우리나라 輸入政策의 沿革
- III. 成長段階別 輸入政策의 特徵과 問題點
- IV. 80年代의 輸入政策方向

## I. 序 論

韓國經濟는 지난 17年間의 高度成長을 통하여 國際收支의 持續的인 改善과 産業構造의 刮目할 만한 變化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向後 80年代에도 持續的인 經濟成長을 계속해 나가 기 위해서는 國際收支의 꾸준한 改善과 함께 産業構造의 順坦한 轉換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韓國의 輸入政策은 과거와 같은 國際收支防禦와 國內産業保護 中心의 機能으로 부터 벗어나 점차로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

---

---

培養을 위한 産業政策의 機能이 中心이 되는 方向으로 轉換되는 것이 要望된다. 이러한 要望에 副應하여 本稿에서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輸入政策을 評價해 봄으로써 80年代에 要望되는 輸入政策의 方向을 摸索코자 한다.

이에 따라 첫째로 韓國의 輸入政策의 沿革을 1945년부터 1979년까지 成長段階別로 구분하여 要約하였고, 둘째로는 現在까지의 輸入政策을 諸機能別 및 政策手段別로 구분하여 그 特徵들을 檢討했으며 이와 아울러 現存 輸入政策上의 問題點들을 分析했다. 끝으로 80年代에 要望되는 輸入政策의 基調轉換과 輸入自由化를 위한 政策方向에 대하여 논하였다.

## II. 우리나라 輸入政策의 沿革<sup>1)</sup>

### 1. 1945~53年：解放과 動亂期

1945年 8月 15日 解放과 함께 韓國經濟는

---

筆者：韓國開發研究院 首席研究員

1) 우리나라 輸入政策의 沿革內容은 다음의 資料에서 拔萃한 것임. 韓國銀行(1954~78), 韓國貿易協會(1950~78), 財務部(1967), 韓國貿易研究所(1968), 全國經濟人聯合會 編(1975), 金光錫·래리 E. 웨스트팔(1976),

日本經濟圈으로부터의 突然한 分離와 더불어 南北間의 分斷이라는 宿命的인 變革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惹起된 貿易의 斷絶은 生産活動의 극심한 沈滯를 加速化시켰다. 解放과 함께 樹立된 美陸軍 軍政廳은 占領地域의 救護援助인 GARIOA(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 援助를 바탕으로 生産活動의 回復과 民生安定을 圖謀함과 同時에 貿易의 再開을 試圖하였다. 軍政廳은 日帝下에서 通用되었던 貿易에 관한 法令들을 당시의 現實에 맞게 改正하여 公布하였는데 그 主內容은 一切의 輸出과 輸入은 軍政廳이 指定한 者만이 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든 非援助輸入品에 대해서는 關稅率을 대폭 引下하여 10%의 一定率로 賦課토록 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關稅率 改正에는 關稅의 主要 機能인 輸入需要의 調節과 國內産業保護의 機能이 反映되지 않았는데 그 理由로는 당시 民間企業의 國際貿易에 對한 經驗未熟과 資本 및 國際去來 基盤의 부족, 그리고 國際去來를 清算할 수 있는 換金制度의 未備 等으로 貿易量이 극히 微小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解析된다.

1946年 4月 美軍政廳은 關稅行政을 交通部로부터 財務部로 移管하였으며 不要不急品의 輸入을 抑制하고 緊要한 國內商品의 輸出을 抑制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品目別 輸出入許可制를 실시하였다.

1947年 6月에는 朝鮮換金銀行이 설립되어 처음으로 外換業務가 시작되었다. 또한 同年 8月에는 對外貿易規則이 公布되었으며 이에 따라 輸出入許可制에 依한 「바터」貿易이 許容되었고 또한 貿易業은 免許를 획득한 자에 한

하여 輸出入表에 의하여 行하도록 되었다.

이러한 諸措置에도 불구하고 民間貿易量은 微小한 水準에 머물러 있었으며 商品輸入은 주로 美軍政援助를 中心한 輸入計劃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輸入은 大部分 約 4億弗의 GARIOA援助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 中 約 90% 以上이 食料品과 肥料를 포함한 消費財輸入에 사용되었다.

1948年 8月 15日 民政이 樹立됨에 따라 새 政府는 同年 12月 10日 美合衆國政府와 韓美 間援助協定을 調印하였고 이 協定에 따라 韓國政府는 受援의 條件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事項을 遵守할 것을 美國政府와 約定하였다.

- 1) 均衡豫算의 編成
- 2) 信用의 統制
- 3) 外國貿易의 統制 및 國際收支防禦
- 4) 外換率의 安定

本 約定의 調印과 함께 韓國政府는 韓美間의 援助關係를 救護性格의 援助에서 脫皮하여 經濟再建을 위한 援助로 轉換시키기 위하여 美國政府와 協議하기 시작하였다. 즉, 政府는 1949년에 2次大戰 以後 西歐經濟의 復舊를 위하여 美國政府가 시작한 Marshall 援助計劃과 同質의 性格인 ECA(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援助計劃에 대하여 美國政府와 協議하기 시작하였다. 當初 ECA가 美國議會에 提出한 援助計劃에 의하면 約 3億弗의 無償援助를 財源으로 1950년부터 3年동안 農産物의 自給自足, 生必品 및 肥料生産施設의 復舊, 電力 등 社會間接資本의 擴充을 達成함으로써 計劃이 끝나는 1952년에는 無償援助를 받지 않고도 韓國經濟가 自立經濟體制로

徐錫泰(1980), Suk Tai Suh(1980-a), Suk Tai Suh(1980-b), Suk Tai Suh(1980-c).

轉換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骨子로 하였다. 그러나 이 援助案이 美國議會에서 否決됨에 따라 1950年初에 當初의 規模보다 훨씬 적은 約 1億弗 規模의 援助案을 提出하여 美國議會를 通過하였다. 그러나 經濟再建을 위한 ECA 援助가 本格的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6·25動亂으로 이 또한 流産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政府는 한편으로는 ECA 援助를 推進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民間貿易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1949年 2月 貿易金融制度를 실시하였는데 商工部가 정한 輸出獎勵品目과 輸入許可品目に 한하여 60日 期限으로 所要資金의 50% 限度內에서 지원한 것이 貿易金融의 嚆矢가 되었으나 그 金額은 매우 微小한 것이었다.

1949年 11月 政府는 關稅法을 制定하였는데 이는 美軍政下에서의 10%의 一定率關稅를 廢止하고 總 1,706個 品目中 160個 品目に 대하여는 完全 免稅措置하였고 1,546個 品目に 대하여는 처음으로 單純平均名目關稅率이 25.3%가 되는 差等關稅率制를 制定하였다. 또한 이보다 앞서 1949年 2月 政府는 國際收支防禦를 위하여 처음으로 商品別 및 地域別 輸出輸入의 「쿼터」制를 輸出入許可制와 함께 실시하였다.

1951年 6月 動亂의 渦中에서도 政府는 輸出增進을 圖謀하기 위하여 特定한 非必需 國內生産品(總 57個 品目)의 輸出에 대하여 그 輸出稼得額의 1~10%(平均 5%)에 해당하는 金額의 限度內에서 正常的으로는 輸入이 許用되지 않았던 約 40個 人氣品目の 輸入을 許容하는 特惠輸出制度를 실시하였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試圖된 輸出入 「링크」制(Export-Import Link System)이며 이 「링크」比率은 그후 계

속 上向調整되었다. 그러나 「링크」된 輸入品目を 一般 「쿼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制度는 輸出增進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였다.

1951年 政府는 또한 처음으로 施設財 및 主要工業用 原料輸入에 대하여 關稅免除制를 실시함으로써 生産活動의 復舊를 試圖하였다.

動亂期間中 地域적으로 가까운 日本으로부터의 輸入이 急増함으로 인한 對日逆調가 深化되자 1952年에 와서 政府는 全적으로 日本에 依存하고 있던 輸入商品을 他地域으로 轉換시키기 위하여 對日輸入을 抑制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對日逆調문제를 是正하기 위해서 취한 政府의 輸入多邊化政策이 되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動亂期間에는 ECA의 經濟復舊援助가 緊急救護援助로 轉換되었고 救護援助의 中樞는 UN軍의 對民間救護援助인 CRIK(Civilian Relief in Korea)였으며 주로 生必需品 및 消費財와 原料가 1950년부터 54년까지 約 4億 6千萬弗정도 導入되었다. 1950年 12月에는 UN總會에서 韓戰戰爭이 곧 끝날 것이라는 展望下에서 終戰 직후의 經濟再建을 위하여 UNKRA(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를 통한 援助案을 決議하였고 1951년부터 UNKRA 援助가 시작되어 1960年 끝날 때까지 約 1億 2千 2百萬弗의 救護 및 經濟再建 援助가 導入되었으며 動亂이 끝나는 1953年에서 1955년까지의 FOA(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를 통한 美國의 對韓復舊援助는 約 3千 3百萬弗이었다

## 2. 1954~60年：戰後復舊期 및 輸入代替爲主의 經濟安定期

1954년부터 政府는 經濟復舊를 위하여 生必品 및 肥料를 爲始한 主要原資材와 資本財를 두가지 財源을 통해서 輸入하였다. 첫째는 ICA(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가 中心이 된 無償援助와 이에 의한 輸入計劃이었고 둘째는 政府의 對 UN軍貸與金償還弗 및 輸出外換으로 構成된 政府保有外換에 의한 分期別 輸入計劃을 통한 輸入이었다.

1954年 11月 政府는 輸出의 地域別「쿼터」制를 廢止하고 品目別「쿼터」制를 실시하였으나 同年 3月 以後 당시 가장 중요한 輸出品이었던 重石 輸出이 中斷되고 UN軍貸與金償還弗도 UN軍의 점진적인 撤收와 償還換率의 引上으로 현저히 減少함에 따라 급격한 外換不足에 逢着하게 되었다.

1955年 政府는 分期別貿易計劃에서 半期別貿易計劃으로 移行하였고 이 計劃下에서는 許可 또는 禁止되는 品目の 明細를 포함하여 半期別「쿼터」가 品目別로 明示되었다. 또한 國內生産이 可能한 品目を 無條件 輸入禁止品目으로 구분함으로써 처음으로 輸入의 量的 規制政策이 國內産業의 保護手段으로 活用되기 시작하였다.

1957年 上半期 貿易計劃에서는 새로운 輸入品目들이 첨가되었고 下半期 貿易計劃에서는 貿易計劃의 基本的인 構造가 다음과 같은 形態를 취하게 되었다.

1) 輸出計劃과 輸入計劃은 自動承認品目과 制限品目 및 禁止品目으로 구분하여 公告한다.

2) 商工部는 禁止品目이나 輸入制限品目の 輸入許容이 國內物資需給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輸入을 許容할 수 있는 法的 根據를 特別規定으로 정한다.

1957年 12月 13日 政府는 政府樹立 以後 처음으로 制度的으로 體系화된 「貿易法」을 制定하였고 1958年 3月 18日에는 「貿易法施行令」 및 「貿易委員會規程」을 公布하였고 同年 5月 7日에는 「貿易法施行細則」을 公布함으로써 그 間 美軍政 때부터 數次 散發的으로 改正되어 온 貿易政策이 비로소 法的인 體系를 갖추게 되었다. 이 貿易法은 韓國經濟의 後進性에 着眼하여 國內産業의 保護를 위해서 政策的으로 要請되는 가능한 統制手段을 制度化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長期的인 眼目에서 韓國經濟에 要望되는 貿易自由化의 原則을 國家의 政策的인 目標로 明文化하여 向後 계속 追求해야 할 課題로 明示하였다.

1959年 10月 政府는 輸出促進을 위하여 輸出用原資材의 關稅免除과 特定 主要原資材 및 資本財에 대한 關稅減免措置를 貿易法施行令上에 反映시켰다.

1954년부터 1960년까지의 輸入政策은 國際收支防禦와 國內産業保護를 위한 輸入의 量的 規制로 特徵지어지며 이를 위한 政策手段으로는 品目別 地域別「쿼터」制와 期別公告制下에서 禁止 내지 輸入制限措置가 活用되었고 輸出促進을 위하여는 特惠輸出制度和 輸出入「링크」制가 채택되었으며 1959년에는 輸出用原資材의 關稅免除가 실시되었다.

1954년부터 1964년까지의 輸入政策은 輸入代替産業의 育成을 통해서 國際收支를 防禦하 工業化를 達成하기 위한 成長政策 때문에

輸入의 量的 規制로 特徵지을 수 있겠다. 따라서 國際收支의 均衡은 주로 美國의 對韓無償經濟援助에 의해서 達成되었고 輸入의 規模는 주로 ICA가 中樞가 된 無償援助의 規模에 따라 결정되었다.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5년부터 60년까지 商品 및 用役의 收支赤字規模는 年平均 297百萬弗이었으며 移轉去來의 黑字規模는 年平均 306百萬弗이었는데 이는 商品 및 用役의 赤字規模의 102.7% 水準이었다. 移轉去來黑字의 約 93%가 政府移轉去來黑字였으며 이 中 ICA援助가 年平均 2億5千萬弗로서 政府移轉去來黑字의 82%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 3. 1961~66年：開發計劃의 시작과 輸出主導成長을 위한 貿易政策의 轉換期

1960年의 4·19學生義學과 1961年의 5·16軍事革命으로 이어지는 1960年과 1961年은 景氣沈滯, 外換不足, 失業의 急增, 그리고 社會的

不安으로 인한 投資의 減少 등으로 특징지어졌다. 이러한 條件下에 1960年의 새 政府는 美國의 새로운 對外援助法(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下에서 無償援助가 激減하게 되는 難局에 逢着하게 되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政府는 그 동안 斷絶되었던 對日國交正常化를 推進함과 아울러 中斷되었던 對日交易을 再開하였다. 그러나 鑛產物 및 水產物이 主宗을 이루고 있었던 對日輸出이 不振함에 따라 慢性的인 外換不足을 輸出을 통해서 短期的으로 解消하기는 不可能하게 展望되었다.

1961年의 軍事政府는 이러한 慢性的인 國際收支의 赤字문제와 國內投資·貯蓄間의 「갭」(investment-saving gap)을 解消하기 위하여 對美經濟協力外交를 강화하는 한편 輸出產業의 擴充을 國家經濟의 最優先政策目標로 세우고 第1次 5個年經濟計劃을 樹立하였다. 政府는 또한 經濟計劃事業의 財源確保를 위해서 첫째는 國內貯蓄増大를 통한 內資調達의 極大化方案을 講究하였고, 둘째로는 輸出促進을 위해서 輸出支援政策을 制度化시켰고, 셋째는 外

<表 1> 國際收支와 經濟援助(1955~60)

(단위：經常價格, 百萬弗)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年平均 1955~60
A. 商品 및 用役							
1. 受 入	70.6	64.7	78.7	92.4	103.6	116.9	—
2. 支 給	337.3	394.0	466.2	403.6	331.1	379.2	—
3. 收 支(1-2)	-266.7	-329.3	-387.5	-311.2	-227.5	-262.3	-297.4
B. 移 轉 去 來							
1. 民 間(純)	16.9	22.8	29.1	26.3	17.2	19.6	22.0
2. 政 府(純)	213.5	329.6	355.8	322.6	266.7	256.1	284.1
3. 收 支(1+2)	230.4	352.4	384.9	348.9	243.9	275.7	306.0
C. 經常收支(A+B)	-36.3	23.1	-2.6	37.7	16.4	13.4	8.6
D. (B.3) / (A.3) : %	86	107	99	112	107	105	102.7
E. (B.2) / (B.3) : %	93	94	92	92	93	93	92.8
F. ICA 無償援助	205.8	271.1	323.3	265.6	208.3	225.2	249.9

資料：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및 Suk Tai Suh(1980-a).

資導入法을 制定하여 激減하는 無償援助에 對  
備하여 公共 및 商業借款과 外國人投資의 增  
大를 圖謀하였다.

1961年과 1963年 사이에 政府는 深刻한 外  
貨不足 때문에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半  
期別 貿易計劃上的 輸入可能對象品目を 계속  
下向 調整하였다.

1961年 7月 政府는 臨時特別關稅法을 制定  
하였는데 그 立法趣旨는 換率制度改正에 따른  
不當利得을 吸收하기 위한 것이다. 즉 從前의  
複數換率制를 廢止하고 單一換率을 採擇함에  
따라 어떤 輸入商品價格이 과거의 複數換率制  
下에서의 輸入의 圓貨價格보다 낮게 되므로  
不當利益이 發生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價格의  
급격한 乖離와 不當利潤을 豫防하기 위하여  
約 700個의 不要不急品目を 國內價格對 輸入  
價格(C.I.F.)比率에 따라 4個의 類型으로 구  
분하여 正規關稅 以外에 特別關稅를 賦課하  
였다.

1961年 政府는 또한 「特定外來品販賣禁  
止法」을 制定하여 密輸入品 및 不急한 奢侈品의  
輸入을 抑制하는 措置를 취하였다. 또한 1962  
年 3月과 5月에는 각각 輸出振興法과 施行令

을 制定 公布하였으며 이에 따라 內國稅·關  
稅 및 金融上的 輸出支援制度가 定着하게 되  
었고 民間의 商品輸入權을 輸出實績에 結符시  
키는 輸入資格도 從前의 5千弗의 輸出實績에  
서 1962년에는 1萬弗로 引上시켰고 63년에는 2  
萬弗로, 64년에는 3萬弗로 每年 引上시켰다.

1963년에 政府는 그동안 部分的으로 실시해  
오던 輸出入「링크」制를 擴大해서 모든 民間輸  
入을 輸出弗에 局限시켰고 또한 輸出外換證書  
의 自由賣渡制를 실시한 결과 輸出外換의 「프  
레미엄」이 誘發되어 實効輸入換率이 名目換率  
을 훨씬 超過하게 되었다. 그리고 輸出外換證  
書의 自由賣渡制 실시에 따라 自動承認品目의  
範疇內에서는 實効換率과 關稅에 의한 規制外  
에는 완전한 自由貿易이 이루어진 셈이었다.

그러나 이 制度는 換率政策을 포함한 輸出  
支援政策의 確立으로 1964年 下半期에 廢止되  
었다. 또한 政府는 1966年 上半期에 部分的인  
輸出入「링크」制를 廢止했으나 下半期에 制限  
된 品目에 한해 「링크」制를 다시 부활시켰다.

1964年과 1966년에는 輸入需要가 급격히 增  
大했기 때문에 이를 抑制하기 위하여 輸入代  
金事前預置制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輸入擔保  
金積立制의 一環으로 吸收되었다.

<表 2> 半期別 貿易計劃上的 輸入對象品目

	A. A. <sup>1)</sup>	制限	合計	禁止
1961年 前半期	1,546 <sup>2)</sup>	35 <sup>3)</sup>	1,581	305
1961年 後半期	1,015	17	1,132	355
1962年 前半期	1,195	119	1,314	366
1962年 後半期	1,377	121	1,498	433
1963年 前半期	776	713	1,489	442
1963年 後半期	109	924	1,033	414

註: 1) A. A.는 自動承認品目を 의미함.

2) 輸出代錢에 의해서만 輸入할 수 있는 309個品目  
을 포함.

3) 特定한 輸出品目에 「링크」된 輸入品目 포함.

資料: 全國經濟人聯合會, 『韓國經濟政策 30年史』, 1975.

#### 4. 1967~79年: 輸出主導成長과 輸入 自由化의 準備期間

1967年 7月初 商工部는 同年 下半期부터 실  
시할 期別公告制 形態의 貿易計劃을 지금까지  
의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制에서 「네  
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制로 改革하기  
위하여 特別委員會를 設치하였고 7月 25日 期  
別公告制의 形態를 「네거티브 리스트」制로 改

革하여 公告하였다. 이 制度的 改革은 1957年의 貿易法에 明示된 貿易自由化의 原則을 實現하기 위한 制度的 改革의 一環으로서 特別委員會는 다음의 原則을 設定하였다.

- 1) 이미 輸入이 自由化된 品目은 이를 계속 自由化한다.
- 2) 基本關稅率이 50% 以上인 品目은 優先的으로 自由化한다.
- 3) 外換對數<sup>2)</sup>가 500 對 1 以上인 品目은 優先 自由化한다.

「네거티브 리스트」制로 移行한 以後 輸入 禁止品目은 계속 줄어들었으나 自動承認品目은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7年 下半期부터 下向調整되었다. 反面에 輸入制限品目은 1967年 下半期以後 增加하였는데 이는 慢性的인 國際收支赤字 때문에 貿易自由化가 1967年의 制度的인 改革以後로는 큰 進展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68年 1月 財務部는 「네거티브 리스트」制를 補完하기 위하여 新關稅法을 制定하였는데 그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 1) 關稅對象 基本 品目數를 2,044個에서 3,019個로 擴大하였고,
- 2) 輸入制限品目에 대해서는 緊急關稅制를 포함하여 關稅率을 調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쿼터」品目の 超過輸入分에 대하여는 關稅率을 調整하였으며,
- 4) 相計關稅 및 特惠關稅 등을 制度化하였고 특히 彈力關稅制度를 導入하여 政府의 行政令으로 個別品目の 基本關稅率의 50% 範圍內에서 稅率을 彈力的으로 調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5) 또한 新關稅法이 發効된 以後에도 特惠關稅는 不要不急品の 輸入을 制限하기 위하여 계속 存續시켜 運用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67年 下半期부터 政府는 輸入擔保金積立制를 강화하여 積立率을 引上했으나 1970年에 가서는 1968年 水準으로 다시 引下하였다. 1970年 以後에는 輸入政策上에는 큰 變化가 없었으며 다만 國際收支與件의 變動에 따라 自動承認品目數를 늘리거나 혹은 줄이는 정도였고, 「쿼터」輸入品目の 「쿼터」와 輸入代金事前預置制를 國際收支與件에 따라 伸縮的으로 運用하는 것 등이었다. 특히 1970年 以後에는 輸出의 持續的인 好調과 순탄한 外資導入으로 政府는 輸入의 許可制 및 推薦制를 緩和하여 貿易自由化基調를 堅持하는 한편 國內經濟安定化政策의 一環인 國內 主要物資의 安定供給을 위하여 1967年 以後 실시해 온 對日事前承認制를 대폭 緩和하였다.

<表 3> 半期別 輸入公告

	輸入禁止品目	輸入制限品目	自動承認品目	總 計
1963年 下半期	414(28%)	924(64%)	109 (8%)	1,447(100%)
1967年 下半期	118 (9%)	402(31%)	792(60%)	1,312(100%)
1977年 下半期	50 (5%)	456(41%)	591(54%)	1,097(100%)

資料：商工部.

2) 外換對數=[輸入商品의 國內都實物價-(一般關稅+物品稅+附帶經費)]+(輸入商品의 C.I.F. 外換價格)

1973年 2月 5日 財務部는 關稅率을 대폭 改正하였는데 主要內容으로는 新設輸入代替產業과 既存主要輸入代替產業에 대한 保護關稅率을 上向調整하고 이미 國際競爭力이 있다고 판단되는 產業에 대해서는 保護關稅率을 引下하는 것이었다.

本關稅率改正에서는 總關稅對象品目數를 3,174個에서 3,984個로 擴大하였고 單純名目平均關稅率을 從來의 38.8%에서 31.3%로 引下시켰으며 또한 從來에 실시해 오던 特別關稅制를 廢止하였고 行政權에 의한 彈力關稅率의 基本關稅率에 대한 調整範圍를 從前의 50%에서 100%까지 擴大하였다. 이와 같은 關稅率改正은 그간 輸出의 持續的인 伸張으로 國際收支가 크게 改善됨에 따라 輸入自由化의 與件이 造成되어 왔기 때문에 輸入自由化에 對備하여 취해진 措置였다.

그러나 1974年の 石油波動으로 國際收支가 급격히 惡化함에 따라 政府는 다시 輸入抑制措置를 강화하였다. 첫째는, 從來의 主要產業에 필요한 資本財 및 特定 主要原資材의 輸入에 대한 包括的 關稅減免制를 廢止하고 主要產業別 關稅減免對象品目을 縮小調整하였다. 둘째는, 輸入推薦制와 許可制를 통해 輸入抑制를 강화하였고 期別公告上의 AA(automatic approval) 品目の 增加는 中斷되었다.

1975년에는 輸入制限強化가 輸入政策에 反映되었는데 主要內容으로는 첫째, 品目別 輸入限度制의 運用, 둘째, 外貨割當品目の 1974年水準의 維持, 셋째, 「링크」輸入品目の 「링크」率 下向調整, 넷째, 輸入擔保金積立率의 上向調整, 다섯째, 輸出用原資材의 損耗率의 下向調整, 그리고 輸出用原資材의 國產代替를 促進하기 위한 關稅還給制의 採擇 등이었다.

그러나 政府는 이와 같이 輸入의 量的 規制를 강화한 反面에 1967年 以來 극심한 入超國(주로 日本이 해당)에 대하여 실시해 오던 對入超國事前承認制를 廢止함으로써 貿易政策上 無差別原則과 自由貿易原則을 크게 反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措置는 世界的인 石油波動과 함께 닥쳐온 主要原資材의 供給不安을 解消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1974年과 1975년에 政府는 奢侈性品目과 不要不急品目の 輸入을 抑制하는 方向으로 期別公告制를 運用하였고 반면에 原油, 原綿, 古鐵 및 原木 등의 主要原資材輸入에 대해서는 金融支援을 강화해 줌으로써 主要原資材의 安定供給을 圖謀하였다. 또한 彈力關稅를 活用하여 이들 品目에 대한 實効關稅率을 引下시켰으므로써 輸入供給을 圓滑하게 해 주었다.

1976년에는 中東石油「달러」의 還流가 순조로왔고 世界經濟가 回復局面으로 들어서게 되자 政府는 國內物資需給의 均衡과 生産活動의 促進을 위하여 輸入抑制措置를 緩和하기 시작하였다.

1977年 輸出 100億弗 達成과 中東建設輸出의 好調로 인하여 經常收支의 黑字를 達成하였다. 따라서 政府는 輸入禁止 및 制限品目の 規制를 緩和하기 시작하였다. 즉, 産業用 및 政府所要 機械類의 輸入節次를 簡素化하는 措置를 취하였다. 또한 1978年 5月 1日을 기하여 1次로 現在의 自由화된 品目과 장래에 自由化될 豫示品目으로 구분하여 期別公告制를 통하여 輸入自由化를 시작하였다. 이는 1957年 貿易自由化原則을 明文化한 貿易法이 制定된 지 22年만에, 韓國이 1955年 IMF에 加入한 지 24年만에, 그리고 1967年 「네거티브」制



로 移行한 지 12年만에 輸入自由化가 主要政策課題로 등장한 것이다<sup>3)</sup>. 1次 輸入自由化措置 以後 1979년까지 4次에 걸친 自由化를 통하여 期別公告下의 4單位基準 總品目 가운데 自動承認品目的 比率이 67%까지 提高되었다.

그러나 自由화된 品目中 상당한 部分이 25個에 달하는 各種 特別法の 規制를 優先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輸入自由化의 實効는 微小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次 輸入自由化 以後 政府는 自由화된 品目들을 完全自動承認品目, 監視品目 및 事前申告品目的 세 가지 類型으로 구분하여 期別公告制를 運用함으로써 輸入自由化에 의한 過多한 輸入誘發을 抑制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978년에 시작된 輸入自由化는 1978年과 1979년에 國際收支가 급격히 惡化함으로 인하여 더 以上 進展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輸入規制를 緩和해 온 輸入政策을 다시 1974年 石油波動 때 취한 輸入抑制方向으로 急旋回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78年과 1979年の 貿易收支赤字의 深化要因은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實質商品輸出의 鈍化와 實質商品輸入의 急増 및 輸入單價의 急上昇에서 찾을 수 있다. 經常價格으로의 商品輸出은 1978年과 1979년에 각각 27% 및 16%로 增加했지만 1975年 不變價格으로는 1978年에 14.6% 增加했으며 1979년에는 2.6% 減少했다. 反面에 經常價格으로의 商品輸入은 1978年과 1979년에 각각 38.1%와 31.3%로 增加하였고 1975年 不變價格으로는 30.5%와 11.7%로 각각 增加하였다.

3) 日本은 1955年 韓國과 같은 해에 IMF에 加入하여 5年 後인 1960년에 輸入自由化를 斷行하기 시작하였다. 徐錫泰(1978) 參照.

<表 4> 商品輸出 및 輸入의 推移

(단위: 10億弗)

	1977	1978	1979
商品輸出(經常價格) (增加率)	10.0 (28.2)	12.7 (27.0)	14.7 (16.0)
商品輸入(經常價格) (增加率)	10.5 (25.0)	14.5 (38.1)	19.0 (31.3)
貿易收支	-0.5	-1.8	-4.3
輸出單價指數 (1975=100)	122.3	135.4	161.3
輸入單價指數 (1975=100)	100.2	105.8	124.3
純商品交易條件 (1975=100)	122.0	128.0	129.8
商品輸出(75年 不變 價格) (增加率)	8.2 (17.1)	9.4 (14.6)	9.1 (-2.6)
商品輸入(75年 不變 價格) (增加率)	10.5 (22.1)	13.7 (30.5)	15.3 (11.7)
貿易收支(75年 不變 價格)	-2.3	-4.3	-6.2

資料: 經濟企劃院, *Economic Bulletin*, Feb. 1980.

### Ⅲ. 成長段階別 輸入政策의 特徵과 問題點

韓國의 輸入政策을 1945年 解放以後 昨今の 石油波動을 경험한 現在에 이르기까지 主要機能別로 區分해 보면 다음의 네 가지로 要約된다. 첫째는, 國際收支防禦를 위한 輸入規制의 機能, 둘째는, 産業保護를 위한 機能, 셋째는, 輸入自由化를 위한 機能, 그리고 넷째는, 輸出支援을 위한 機能으로 分類할 수 있다. 이러한 諸機能을 成長段階別로 보면 解放以後부터 60年代初까지는 國際收支防禦와 國內産業保護의 機能이 輸入政策의 核心을 이루어 왔고 60年代 以後부터는 國際收支의 改善과 함께 輸入自由化의 機能과 輸出支援機能의 重要性이 相對적으로 增加하여 왔다.

以上の 諸機能은 輸入의 直接規制手段과 間

接規制手段으로 구분할 수 있다. 直接規制手段의 根幹은 期別公告制이고 間接規制手段의 根幹은 關稅政策, 換率政策 및 總需要政策으로 構成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期別公告制에 의한 直接規制는 1953년까지는 分期別貿易計劃에 의해서, 1954年以後부터는 半期別貿易計劃에 의해서 遂行되어 왔고, 또한 1967年以前까지는 輸入抑制의 性格이 강한 「포지티브 리스트」제에 의해서, 67年以後부터는 輸入自由化의 性格이 강한 「네거티브 리스트」제에 의해서 運用되어 왔다. 間接規制手段인 關稅에 의한 輸入政策은 60年代以後 輸入依存度가 深化해 오며 따라 그 重要性이 相對적으로 增大해 왔고 이에 副應하여 政府는 彈力關稅를 포함한 關稅改革과 關稅行政의 伸縮的 運用으로 輸入政策機能을 遂行해 왔다. 1968

年과 1973年의 關稅改革 以後 平均名目關稅率 및 實効關稅率이 계속 下落하여 왔는데 이는 60年代以後 輸出主導의 高度成長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輸出用原資材의 關稅減免支援과 같은 輸出支援機能과 賦存資源이 貧弱한 韓國經濟가 필요로 하는 主要原資材 및 資本財의 安定供給을 위한 機能 및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 培養을 위한 輸入自由化의 機能을 反映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韓國의 實効關稅率(總關稅徵收額對 總商品輸入額의 比率)은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4年의 22.8%와 60年의 23.5%에서 1976年과 1978年에도 각각 6.5%와 6.1%로 계속 下落하였다. 그러나 輸出用原資材의 輸入을 除外한 內需用 總商品輸入의 實効關稅率은 1976年과 1978年에 각각 9%와 8%의 높은 水準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水

<表 5> 實効關稅率(經常價格)

(단위: 百萬元)

	總商品輸入 (1)	輸出用原資材 輸入 (2)	總關稅徵收額 (3)	實効關稅率 (A) (3)/(1)	實効關稅率 (B) (3)/(1)-(2)
1954	4,379.4	—	998.8	22.81	—
1960	21,898.1	—	5,150.2	23.52	—
1976	4,246,432.4	1,171,323.5	275,512.0	6.49	8.96
1978	7,246,414.1	1,631,055.0	443,362.0	6.12	7.90

資料: 財務部.

<表 6> 輸出 및 輸入依存度(經常價格基準)<sup>1)</sup>

(단위: %)

		1953	1961	1971	1976	1978
一 產 次 業	輸出對 生産額 比率	4.02	1.86	2.72	8.06	8.68
	輸入對 國內需要比率 <sup>2)</sup>	14.09	3.28	9.12	26.78	24.07
輕 工 業	輸出對 生産額 比率	1.04	1.79	17.98	34.76	36.64
	輸入對 國內需要比率 <sup>2)</sup>	24.17	4.22	7.83	17.91	19.01
重 工 化 學 業	輸出對 生産額 比率	1.73	1.16	6.51	18.53	22.71
	輸入對 國內需要比率 <sup>2)</sup>	38.39	36.14	31.77	27.48	34.85

註: 1) 購買力評價換率로 算出함.

2) 國內總生産額+輸入-輸出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貿易協會, 『貿易統計年報』; Suk Tai Suh(1980-b).

準은 先進工業國의 2~4%에 비하면 倍以上의 높은 水準인 것이다<sup>4)</sup>.

反面에 輸入의 間接規制手段의 하나인 換率政策은 60年代以後 輸出主導의 高度成長을 위하여 輸出支援側面에 더 力點을 두어 왔고 反面에 輸入需要의 規制를 통한 國際收支改善側面은 等閑히 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主要原因은 그 동안 高度成長을 達成하기 위한 政策目標가 輸出增進이 되어 왔으며 外資導入의 順坦으로 韓國經濟의 輸入依存度가 계속 深化되어 왔기 때문에 換率引上은 國內物價를 引上시키는 重要한 要因이 되어 온 데서 찾을 수 있다.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의 輸入依存도는 60年代와 70年代에 걸쳐 全産業에 걸쳐 深化되어 왔다. 따라서 換率의 引上은 輸出促進效果를 가지고 있지만 同時에 國內物價引上을 誘發시킴으로써 經濟安定을 沮

害하게 되고 이는 다시 輸出競爭力을 弱화시켜서 다시 換率引上의 要因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換率의 引上은 輸出誘因效果와 國內物價引上 誘因效果와의 相互得失을 勘案하여 斷行해 왔다. 특히 1974年 石油波動以後에는 外債負擔 增加로 인하여 換率政策의 伸縮性은 크게 減少하였다.

그러나 70年代 後盤에 와서 期別公告制上의 輸入自由化의 폭이 增加함에 따라 換率調整에 의해서 輸入需要를 調節할 수 있는 範圍가 增大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認識되기는 韓國의 商品輸入의 構成이 換率變動에 대해서 비교적 非彈力的인 石油類, 資本財 및 輸出用을 포함한 原資材로 되어 있기 때문에 換率調整의 輸入需要調節機能 역시 微弱한 것으로 認識되고 있다. 그러나 換率을 實効換率 및 國內外 物價變動을 勘

<表 7> 輸入의 實質實効換率

	1965	1970	1973	1975	1978	1979 <sup>1)</sup>
1. 名目換率(年平均)	266.17	310.42	398.54	484.00	484.00	484.00
2. 輸入弗當 關稅徵收額	30.23	28.23	21.47	27.12	30.60	30.60
3. 名目實効換率(1+2)	296.40	338.65	420.01	511.12	514.60	514.60
4. 年平均物價指數(1970=100)						
韓國의 都賣物價	68.50	100.00	132.4	238.0	324.9	416.5
日本의 都賣物價	89.8	100.0	115.9	156.8	163.5	184.0
美國의 都賣物價	87.5	100.0	122.0	158.4	189.6	222.1
5. 日本의 円 對  달러換率指數(1970=100.0)	99.11	100.0	118.42	117.20	169.92	139.1
6.  달러價格指數(1970=100) <sup>2)</sup>	88.34	100.00	130.46	172.48	238.56	241.13
7. 相對價格指數(1970=100) <sup>3)</sup>	128.96	100.00	98.53	72.47	73.43	57.89
8. 實質實効換率 <sup>4)</sup>	382.24	338.65	413.84	370.41	377.87	297.90

註: 1) 1979年 3/4分期 基準임.

$$2) \text{ 달러價格指數} = (0.555 \times \text{日本의 WPI} \times \text{日本의 弗/円 換率指數} + 0.445 \times \text{美國의 WPI}) \times \frac{1}{100}$$

0.555는 韓國의 對日本地域 交易量加重值(1970年 基準)이며 0.445는 韓國의 對美地域 交易量의 加重值임. 對日本 交易量 加重值는 실제로는 0.555보다 적지만 1971年 以後부터 시작된 變動換率制下에서 日本을 爲始한 主要先進交易國들의 對美換率變動을 勘案하기 위한 것임.

3) 달러價格指數/韓國의 WPI 指數.

4) (名目實効換率 × 相對價格指數) × 1/100.

資料: 韓國銀行, 『統計月報』 및 Suk Tai Suh(1980-c).

4) Bela Balassa(1976) 參照.

案한 實質實効換率의 概念으로 볼 때 換率이 輸入需要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分析되며 또한 總輸入對象品目的 67%를 自由化한 現 期別公告制下에서는 換率에 의한 價格機能이 輸入需要에 줄 수 있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分析된다. <表 7>에서는 名目換率과 輸入弗當 關稅徵收額을 합한 名目輸入實効換率을 計算하였고 이를 다시 主要交易相對國인 美國 및 日本의 物價變動(都賣物價)과 日本의 對美円貨換率變動을 交易量加重值로 勘案하여 輸入의 實質實効換率을 算出하였다. 表에서 보던 韓國의 實質輸入實効換率は 1965년부터 1978년까지는 年平均 340對 1달러에서 414對 1달러 水準을 유지해 왔으나 1979년에는 國內物價의 相對的 急上昇과 日本의 對달러 換率 引上으로 인하여 297.9對 1달러의 水準으로 約 27% 下落하였다. 이는 곧 商品輸入의 實質費用을 27% 減少시켰으며 따라서 1979年の 國內景氣가 沈滯局面으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輸入의 31% 增加를 誘發하게 한 重要

한 要因으로 分析할 수 있다. 따라서 換率政策은 지금까지와 같이 輸出支援側面에만 局限시켜 運用하지 말고 輸入의 實質費用側面에서 換率의 輸入誘發效果를 勘案하여 輸入需要의 調節機能도 遂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輸入의 間接規制手段이 되는 總需要政策은 그간 追求해 온 高度成長政策 때문에 國際收支를 改善하기 위한 輸入調節機能은 等閑히 하여 왔다. 總需要政策은 政府의 財政通貨信用政策이 根幹이 되며 投資需要의 效率的인 增大와 輸出生產의 促進을 위하여 提供되는 各種 稅制, 關稅 및 金融支援政策 등이 포함된다. 그간 政府는 經濟政策의 諸目標中 高度成長의 目標가 最優先的 目標가 되어 왔기 때문에 總需要政策은 高度成長에 필요한 資本財 및 石油를 포함한 原資材의 輸入供給을 圓滑히 해주기 위한 供給側面의 機能을 重點的으로 遂行해 왔다. 그 原因은 그간 輸出의 持續的인 伸張과 外資導入의 順坦으로 輸入能力이 계속 順坦히 增加되어 왔기 때문

<表 8> 輸入 및 輸出의 GNP 彈性值(1970年 不變價格)

	實質經濟成長率 (%) (1)	實質輸入增加率 (%) (2)	輸入의 對 GNP 彈 性 值 (3) (2) / (1)	實質輸出增加率 (%) (4)	輸出의 對 GNP 彈 性 值 (5) (4) / (1)
9% 以上 經濟成長率	16.7 (73年)	34.9	2.09	56.9	3.41
	15.5 (76年)	28.0	1.81	35.9	2.32
	12.5 (78年)	29.3	2.35	14.3	1.14
	11.4(79.1/2)	25.6	2.25	18.8	1.65
	10.5 (77年)	23.8	2.26	18.9	1.80
	9.2 (71年)	20.7	2.25	29.6	3.22
	平 均			2.17	
9% 以下 經濟成長率	8.7 (74年)	3.5	0.40	9.2	1.06
	8.3 (75年)	1.8	0.22	22.9	2.76
	7.9 (70年)	12.1	1.53	28.4	3.60
	7.0 (72年)	5.1	0.73	50.3	7.19
	平 均			0.72	

註: 1) 平均彈性值은 個別年度彈性值를 算術平均한 것임.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石油波動에 따라 80年代의 世界資本市場의 對開途國資本供給能力이 不透明해져 가고 있고 또한 主要先進交易國들의 保護貿易主義가 점차 膨脹해지고 있기 때문에 外資導入 및 輸出에만 依存하여 國際收支를 均衡시키는 成長政策은 修正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서와 같이 高度成長 一邊倒의 政策目標에서 脫皮하여 國際收支均衡을 위해서 高度成長도 犧牲시킬 수 있는 政策目標의 轉換을 假定한다면 總需要政策은 輸入需要를 效果的으로 調節할 수 있는 手段이 될 수 있다. 즉 지난 70年代 以後 韓國의 經濟成長率과 輸入需要의 增加率間의 關係를 分析해 보면 總需要의 調節을 통하여 經濟成長率을 調整함으로써 輸入需要를 效果的으로 調節할 수 있는 것으로 分析된다. <表 8>에서는 70年代 以後 GNP의 實質成長率과 輸入 및 輸出의 實質增加率間의 關係를 輸入 및 輸出의 對GNP 彈性值의 概念으로 分析하였다. 과거 10年間의 期間을 9% 以上の 高度成長期間(6個年度)과 9% 以下の 低成長期間(4個年度)으로 구분하여 輸入 및 輸出의 對GNP 彈性值를 計算하였다. 9% 以上の 高度成長期間의 輸入의 對GNP 彈性值는 平均 2.17인 反面에 9% 以下の 低成長期間의 彈性值는 平均 0.72이었다. 즉 經濟成長率을 9%로 基準하여 그 以上の 高度成長時에는 輸入需要가 急増하였다. 反面에 그 以下の 低成長時에는 輸入需要의 增加率이 急下落하는 輸入行態를 發見할 수 있다. 또한 輸出增加의 對GNP 彈性值를 계산해 보면 9% 以上の 高度成長時에는 平均輸出 彈性值가 2.26인 反面에 9% 以下の 低成長時에는 平均彈性值가 3.65이었다. 즉 9% 以上の 高度成長期間

에는 輸入의 對GNP 彈性值가 輸出의 對GNP 彈性值와 비슷하므로 國際收支의 改善效果가 약하였으나 9% 以下の 低成長期間에는 輸入 彈性值가 輸出彈性值보다 훨씬 낮으므로(0.72 對 3.65) 輸入需要의 抑制效果와 國際收支改善效果가 매우 큰 것으로 分析할 수 있다. 따라서 輸入需要가 急増하고 國際收支가 惡化할 때에는 經濟成長을 9% 以下の 低成長으로 誘因하는 總需要政策이 필요할 것이고 輸入需要가 減少하고 國際收支가 好轉될 때에는 高成長을 誘因하는 總需要政策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總需要政策에만 依存하여 國際收支의 改善를 誘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以上の 輸入 및 輸出의 對GNP 行態分析은 實質價格基準이기 때문에 石油價格引上和 主要原資材의 價格上昇에 의한 經常輸入負擔增加의 문제는 韓國經濟의 輸入依存도가 높은 以上 總需要政策만으로는 解決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輸入調節機能은 期別公告制, 關稅, 換率政策 및 總需要政策에 의해서 分擔되어야 할 것이며, 과거에서와 같이 輸入調節을 期別公告制와 關稅에만 치중하여 輸入政策을 展開하는 것은 止揚되어야 할 것이다.

## IV. 80年代의 輸入政策方向

### 1. 輸入政策의 基調轉換

一般的으로 開放經濟를 指向하는 開發途上國의 경우 慢性的인 國際收支赤字가 解消되지 않은 段階에서는 輸入을 開放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認識되고 있으며 만약 國際

收支를 保護하기 위하여 輸入의 量的 規制를 가하게 되면 資源配分の 効率化를 阻害하게 된다고 指摘되고 있다<sup>5)</sup>. 韓國經濟는 지난 17年間 輸出主導의 高度成長으로 國際收支는 계속 改善되어 왔지만 1978年과 1979年의 石油價格 急上昇과 重化學工業投資需要에 따른 資本財輸入의 急增으로 經常收支赤字는 크게 增大되어 왔다. <表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經常收支의 赤字幅은 1978年과 1979年에 각각 總經常支給의 5%와 16%에 이르렀다. 또한 80年에도 赤字規模는 더 擴大될 것이 豫상된다. 이러한 國際收支의 惡化는 1978年 5月 1日을 기하여 推進되었던 國內產業構造의 改編과 國際競爭力提高의 長期的인 目標를 위하여 試圖된 輸入自由化를 全面 中斷하게 하는 要因이 되었다.

이러한 現時點에서 韓國의 輸入政策은 좀더 根本的인 基調轉換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短期的인 輸入調節과 長期的인 輸入開放政策을 遂行해 오는데 있어서 주로 期別公告制와 關稅에 의존해 왔지만 앞으로는 前章에서 指摘된 바와 같이 短期的인 國際收支調整은 換率政策 및 總需要政策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期別公告制는 長期的인 輸入開放政策과 國內產業保護政策의 手段으로만 活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換率政策과 總

需要政策에 의한 輸入調節機能은 그간 계속 追求해온 高度成長一邊倒의 成長政策 때문에 그 有用性이 크게 減少되어 왔다. 즉 그간의 高度成長은 外資導入을 誘發시켰고 더 나아가서 이는 韓國經濟의 外債償還負擔을 加重시켰기 때문에 이는 換率運營의 伸縮性을 相對的으로 弱화시켰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앞으로 換率政策의 有用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高度成長一邊倒의 成長戰略으로부터 脫皮하여 外資依存度를 줄일 수 있는 安定成長을 目標로 하는 成長政策으로의 轉換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換率政策과 總需要政策은 國際收支와 輸入需要를 短期的으로 調整하는 輸入政策手段으로 活用됨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또한 그간 短期的인 輸入抑制 내지 調節을 위하여 運營해 온 期別公告制는 資源配分の 効率化와 產業構造改編을 위한 長期的인 輸入政策의 手段으로 轉向됨이 소망스러울 것이다. 關稅政策도 彈力關稅와 같은 短期的인 輸入政策手段과 國內產業의 國際競爭力培養을 위한 점진적인 關稅率引下와 같은 長期的인 政策手段으로 구분하며 運用함이 소망스러울 것이다. 이와 같은 輸入政策의 基調轉換은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와 같은 高度成長一邊倒의 成長政策에서 脫皮하는 것을 前提로 해야 하며 또한 外資導入에 依存하여 國際收支의 均

<表 9> 經常收支赤字規模(經常價格)

(단위:百萬弗)

	商品輸入 (1)	貿易外支給 (2)	商品輸出 (3)	貿易外受入 (4)	移轉去來收支 (5)	經常收支 (6)	(6)/(1)+(2)
1978	14,491	4,226	12,710	4,450	472	-1,085	-0.05
1979	19,024	4,835	14,738	4,781	420	-3,921	-0.16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5) Anne O. Krueger(1978), pp.1~20.

衡을 維持해 온 과거와 같은 成長戰略은 根源의 改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輸入自由化의 展開方向

輸入의 自由化는 現在의 「네거티브 리스트」 制인 期別公告上에서의 自動承認品目的 比重을 增大시켜 나가는 方法으로 推進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期別公告制의 運用은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提高와 産業構造의 改編을 위한 長期的인 輸入政策手段으로 되어야 하며 短期的인 國際收支와 輸入需要의 調節은 換率, 彈力關稅에 의한 關稅政策 그리고 總需要政策에 의해서 遂行되어야 할 것이다.

1978年 以後 推進되어 온 輸入自由化는 몇 가지 중요한 問題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自由化된 많은 品目이 약 25個에 달하는 各種 特別法에 의하며 優先的으로 規制를 받고 있으므로 實지로 自由化된 比率는 67% 보다 낮을 것이다<sup>6)</sup>. 둘째는 自由化된 品目 및 自由化가 豫示된 品目이 BTN 基準으로 4單位 以上の 細分類된 品目別로 列擧되어 있으므로 「네거티브」의 性格보다 「포지티브」의 性格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換言하면 自由化된 品目이 細分類됨으로 인하여 民間企業의 장래 投資對象領域을 좁혀 놓았고 이는 또한 어떤

品目이 어느 時期에 가면 어느 정도의 國際競爭力을 갖출 수 있는가라는 根本的인 國際比較優位의 問題를 政府가 이미 다 결정해 놓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民間企業의 投資選好度를 弱化시키는 結果를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 세번째는 1978年 以後 試圖된 輸入自由化는 商工部에 설치된 '輸入自由化推進委員會에서 斷行하였는데 이 委員會의 構成과 意思決定過程은 民間 各界의 意見이 고루 反映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消費者團體나 專門研究機關, 經濟團體 및 學界의 意見을 國民經濟的 次元에서 反映시킬 수 있는 中立的인 機構가 좀더 소망스러울 것이다. 왜냐하면 輸入自由化는 官主導에 의한 一方的인 推進보다는 官民協同的 努力에 의해서 輸入自由化의 必要性和 方向에 대한 認識度를 높일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해서 추진함이 더 바람직스러울 것이다<sup>7)</sup>. 네째로는 輸入自由化의 豫示品目を 公告함으로써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 培養에 對備할 수 있도록 措置하였으나 지금까지 韓國의 많은 企業들이 오랜 期間동안 政府의 政策의 支援에 크게 依存해 온 惰性이 깊이 뿌리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政府가 단순한 豫示品目的 公告를 한다고 해서 그 오래된 惰性を 버리고 經營合理化, 品質 및 價格競爭力 提高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할 수 있겠느냐의 問題이다. 다섯째는 1978년부터 1979년까지 推進된 輸入自由化의 推進速度가 韓國의 産業構造가 輕工業中心에서 重化學工業中心으로 轉換해 가는 速度에 비하여 너무 緩慢한 것이라고 評할 수 있다<sup>8)</sup>. 輸入自由化가 現段階에서 緩慢하게 推進되게 되면 長期間동안 國際競爭力을 얻지 못할 非能率的인 重化學工業産業들의 生成을 抑制하는 데 失敗할 수 있으며 이는 다

6) 1979年末 現在 期別公告制下에서 自動承認品目的 比率는 BTN 4單位品目 基準으로 總品目數의 67%를 점하고 있다.

7) 日本은 1960年 輸入自由化를 시작할 때 官民合同의 各種 審議會와 委員會를 구성하여 충분한 檢討와 意見交換을 통하여 輸入自由化의 必要성에 대한 認識度를 높였고 方向을 결정하였다. 徐錫泰(1978) 參照.

8) 日本은 1960년에 輸入自由化를 시작하며 4年 後인 1964년에는 輸入自由化率이 1960年의 37%에서 1964年의 97%로 提高되었고, 日本의 重化學工業의 成長도 輸入自由化 以後 本格化한 점을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徐錫泰(1978) 參照.

시 國際競爭力이 없는 產業들을 保護하기 위한 輸入規制를 長期間동안 不可避하게 해 줄 것이다.

以上的 문제점들을 토대로 해서 向後 所望되는 輸入開放政策의 方向을 다음과 같이 要約해 본다. 첫째는 期別公告制下에서 輸入自由化 品目分類의 BTN基準을 현재의 4單位에서 그 以下인 3單位 혹은 2單位로 大分類하여 自由化品目과 豫示品目으로 구분하여 公告함으로써 民間企業의 投資選擇의 範圍를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지금까지와 같은 官主導의 輸入自由化推進委員會를 대폭 改編하며 各種 消費者團體, 研究機關, 學界, 經濟團體 등을 망라하는 各界의 代表가 共同으로 참여하는 官民協同的 機構를 構成하여 自由化의 方向을 모색하고 輸入自由化의 認識度を 높여 줌이 소망스러울 것이다. 셋째로는 政府가 公告한 輸入自由化 計劃이 예정대로 정확히 推進될 것이라는 政策的 意志를 확고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넷째로는 輸入自由化의 速度를 대폭 提高시키는 同時에(예를 들면 86년까지 全品目の 90% 以上을 自由化 豫示品目으로 公告함) 補完對策으로서 彈力關稅를 포함한 關稅率의 再調整이 수반되어야 하며 時限附的인 各種 稅制 및 金融上的 支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는 25個에 달하는 各種 特別法上的 規制가 輸入自由化의 實效를 減殺하지 않도록 特別法에 優先할 수 있는 法的인 制度의 改正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輸入自由化의 展開는 韓國經濟의 向後 成長「패턴」을 크게 변화시켜 줄 것이다. 이러한 輸入自由化政策은 韓國產業의 國際競爭力이 지금까지와 같이 싼 勞賃과 換率引上에 크게 依存하여 온 패턴에서 脫皮하여 品質 및 價格競爭力을 提高시키기 위한 經營의 合理化와 產業構造의 改編을 통해서 國際競爭力이, 提高되는 패턴으로 轉換될 수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 ▷ 參 考 文 獻 ◁

- 金光錫·래리 E. 웨스트팔, 『韓國의 外換·貿易政策』,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⑨, 1976.
- 徐錫泰, 『日本 및 西歐의 輸入自由化過程과 補完對策』, 韓國開發研究院 短期研究報告 第 78-01卷, 1978.
- 徐錫泰, 『韓國의 輸入構造 및 輸入政策』, 韓國開發研究院 研究調查報告 第79-09卷, 1979.
- 全國經濟人聯合會(編), 『韓國經濟政策 30年史』, 社會思想社, 1975.
- 財務部 理財1課, 『우리나라 外換制度와 政策概要』, 研究叢書 3號, 1967.
- 韓國貿易協會, 『貿易年鑑』, 1950~78.
- 韓國貿易研究所, 『輸入需要豫測과 그 調整方案』, 1968.
- 韓國銀行, 『經濟年鑑』, 1954~78.
- Balassa, B., "Incentives for Economic Growth for the Fourth Five Year Economic Plan in Korea", An IBRD Constant Document Paper, 1976.
- Healey, D.J., "Development Policy: New Thinking about an Interpretation", i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 No.3, Sept. 1972.
- Krueger, Anne O., *Foreign Trade Regime*



- and Economic Development: Liberalization Attempts and Consequences*, NBER, Vol. X, Cambridge; Ballinger Pub. Co., 1978.
- Suh, Suk Tai, *Foreign Assistance and Foreign Capital Inflow in Korea: 1945-79*(Korea Modernization Study), KDI, forthcoming, 1980(a).
- Suh, Suk Tai, *Import Substitu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KDI, forthcoming, 1980(b).
- Suh, Suk Tai, *A Study on Export Incentive System in Korea*, KDI, forthcoming, 1980(c).